

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-19 검사 Q&A

검사

코로나19 검사할 수 있는 대상

- 질병관리본부 지침 상의 사례 정의에 따라 의사환자 및 조사대상 유증상자로 분류되는 경우에 검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.
- 막연한 불안감으로 검사를 받으실 필요는 없으므로, 의사선생님의 전문적인 판단을 신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의사환자	확진환자의 증상발생 기간 중 확진환자와 접촉한 후 14일 이내에 발열 또는 호흡기증상(기침, 호흡곤란 등)이 나타난 자
조사대상 유증상자	① 의사의 소견에 따라 원인미상폐렴 등 코로나19가 의심되는 자
	② 중국(홍콩, 마카오 포함) 등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-19 지역 전파*가 있는 국가를 방문한 후 14일 이내에 발열(37.5℃ 이상) 또는 호흡기증상(기침, 호흡곤란 등)이 나타난 자 * WHO 홈페이지 참조(local transmission)
	③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-19 국내 집단발생과 역학적 연관성이 있으며, 14일 이내 발열(37.5℃ 이상) 또는 호흡기증상(기침, 호흡곤란 등)이 나타난 자
<출처: 중앙방역대책본부 「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-19 대응지침(7판)」, '20.3.2.기준>	

의사환자와 조사대상유증상자의 다른점

- 의사환자: 확진환자 접촉자(위험도가 높은 경우)
 - 선별진료소(의료기관 또는 보건소)방문하여 진료 및 조치
- 조사 대상 유증상자: 의사환자보다 위험도는 낮은 것으로 판단되나 코로나19 발생 국가 방문력과 의사소견에 따른 코로나19 감염이 의심되는 경우
 - 감염병 발생신고는 반드시 하시고, 역학조사 및 격리 통지서 발급을 하지 않지만 검사 결과 양성이면 확진환자와 동일한 조치를 함.
 - 신고된 사례에 대해서만 검사비 지원가능하므로 제1급감염병(신종감염병증후군)으로 신고 필요

검사 가능한 곳 확인

- 검체 채취가 가능한 선별진료소에서 검사 가능
- 아래 링크 검사 가능한 선별 진료소 확인 가능(전국선별진료소)
(링크) http://www.mohw.go.kr/react/popup_200128.html

(질병관리본부 홈페이지 ->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-> 가까운 선별진료소 찾기)

- 자세한 문의사항은

질병관리본부 콜센터 (☎1339, 지역번호+120) 또는 보건소와 상담

- **제주도 선별 진료소**

제주시: 제주대학교병원, 제주한라병원, 한마음병원, 한국병원, 중앙병원

서귀포시: 서귀포의료원, 서귀포열린병원

검사 채취 방법

- 검체 채취: 의사, 간호사, 임상병리사(의사의 지도하에 시행)
- 지정된 장소(선별진료소 등)에서 총 2가지 검체 채취
 - ① 하기도(가래)
 - 타액 등이 포함되지 않도록 기침하여 객담통에 뱉어 채취
 - ② 상기도(비인두 및 구인두 도말물)
 - (비인두) 콧구멍 깊숙이 면봉을 삽입하여 분비물 채취
 - (구인두) 면봉으로 목구멍 안쪽 벽의 분비물을 긁어서 채취

★가래가 없으면 상기도 검체만 채취하여 송부합니다.

본인이 스스로 가래를 채취하는 경우 음압실의 필요 여부

- 반드시 음압실이 필요하지는 않으나, 에어로졸 발생 가능성이 있으므로 내부순환은 안되고 외부 환기가 잘되는 독립된 공간에서 채취하도록 합니다.

민간 의료기관 코로나19검사비

○ 의사 환자로 신고한 경우* 는 본인부담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.

다만 일반진찰, X-Ray 검사 등 다른 진료비용은 본인이 부담합니다.

○ 의사 환자로 신고하는 경우*

의사 환자	확진환자의 증상발생 기간 중 확진환자와 접촉한 후 14일 이내에 발열 또는 호흡기증상(기침, 호흡곤란 등)이 나타난 자
조사 대상 유증 상자	① 의사의 소견에 따라 원인미상폐렴 등 코로나19가 의심되는 자
	② 중국(홍콩, 마카오 포함) 등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-19 지역 전파*가 있는 국가를 방문한 후 14일 이내에 발열(37.5℃ 이상) 또는 호흡기증상(기침, 호흡곤란 등)이 나타난 자 * WHO 홈페이지 참조(local transmission)
	③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-19 국내 집단발생과 역학적 연관성이 있으며, 14일 이내 발열(37.5℃ 이상) 또는 호흡기증상(기침, 호흡곤란 등)이 나타난 자

<출처: 중앙방역대책본부 「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-19 대응지침(7판)」, '20.3.2.기준>

유전자검사 소요시간

- 유전자검사 소요 시간 : 6시간
 - 검체 이송 시간, 대기시간 고려 검사 후
1~2일 이내에 결과 확인 가능

중국 방문 이력 있고 증상이 없는 경우 - 검사 가능 여부

- 증상 없는 경우 검사 받을 필요 없음.
 - 다만, 중국 여행 후 14일 이내 증상이 나타나면
 - 질병관리본부 콜센터 (☎1339, 지역번호+120) 또는 보건소에 연락하여 검사 가능한 선별진료소 안내 받고 진료소 방문

검채채취 시 표준 주의

○ 표준주의는 의료기관 내에서 환자를 대상으로 하는 모든 처치와 술기, 간호를 하는데 가장 기본적인 지침으로 감염병 전파를 예방하기 위해 공통으로 적용되는 주의사항입니다.

○ 환자의 혈액, 체액, 분비물, 배설물, 손상된 피부와 점막을 다룰 때 표준주의에 따라 환자를 진료하여야 하며, 전파경로별로 접촉주의, 비말주의(5마이크로보다 큰 입자의 비말에 의해 전파되는 질환), 공기주의가 있습니다.

※ 출처 : 질병관리본부. 의료관련감염 표준예방지침(2017), 질병관리본부 홈페이지 → 알림·자료 → 지침

출처

질병관리본부

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-19

**대응 지침서 7-3판 Q&A 게시판
(2020.03.15)**